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춘숙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28

발의연월일: 2020. 7. 6.

발 의 자: 정춘숙·박용진·송옥주

유동수 · 임종성 · 송갑석

김철민 · 서삼석 · 김경협

박찬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 금 수급자에게 재가 및 시설 급여를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에 그 급여 비용을 지급하고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가족요양비 등 특별현금급여를 지급하게 함으로써 수급자의 노후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음.

그런데 법률에는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어 특별현금급여의 경우 약 10년 간 금액이 동결되거나 산정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음. 또한 실무적으로는 1년 주기로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으나 법률상으로는 산정 주기에 관한 세부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음.

이에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뿐만 아니라 특별현금급여의 산정도 함께 규정하고 그 산정 주기를 명시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

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(안 제39조).

법률 제 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의 제목 중 "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"을 "장기요양급여비용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"을 "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"으로 한다.

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등에 따라 제 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아 제39조(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제39조(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의 산정) ①재가 및 시설 급여비 산정)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용은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 년 급여종류 및 장기요양등급 급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등에 따라 제45조에 따른 장기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음 연도의 재가 및 시설 급여 한다. 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 액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제1항에 따른 <u>재가 및 시설</u> 급여비용과 특별현금급여의 지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항목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급금액----사항은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한 다. --.